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일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중에도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조명철 의원님과 설 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감없이 제안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귀한 시간 내시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주 야권후보 단일화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후보의 각종 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경제살리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북한인권 정책은 기존 내용이 되풀이되거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북한은 수많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수많은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주민통제, 기아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인권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부터 UN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UN 총회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전략의 부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철저한 주민통제가 국가체제 유지의 근간이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 없이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기 정부는 실질적인 전략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들이 그곳에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북한의 인권문제를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대선 후보들이 더 깊이 북한인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북한인권 정책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우리사회에 공론화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다 구체화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안녕하십니까? 조명철입니다.

오늘같이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차기정부 북한인권 정책방향’ 토론회를 기획하고, 본 행사를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위원장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인권 개선요구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북한이 보통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요구에 대해서, 북한정권은 ‘마이동풍’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인사들 또한 정쟁을 운운하며 ‘우이독경’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체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및 각종 인권탄압 문제점은 단일민족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실현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한국민들에게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원칙과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갑시다.

지금은 북한정권의 관점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인권문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논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의 자기책임이며, 탈북민들에게는 자력구제의 문제입니다.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니’, ‘외교적 결례니’ 라고 하는 말은 관심의 대상이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문제는 차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들어주고 나가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원회 ‘차기정부 북한인권 정책방향’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7.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명철**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차기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북한인권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차기정부,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은 이념과 국경, 인종, 성별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로써 북한 동포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타국 땅을 헤매고 있고, 정치결사·언론출판·종교사상의 자유는 고사하며 스스로 먹고살 권리, 이동의 자유조차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인권이 열악하다는 것에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개선 방식에는 이견이 많은데, 북한인권은 이미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국제적 이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놓고 좌우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국내의 북한인권 담론과 운동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향후 진보와 보수를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간의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인권문제 유발의 당사자이자 결국에는 해결 당사자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에 보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싹이 형성되고, 인권의 식이 증대되는 점진적, 단계적 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북한인권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정부의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 담론과 운동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7.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설 훈**

- ❖ 일시 : 2012. 11. 27.(화) 14:00~17:00
-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

제1부	등록 및 개회식
13:0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10	개회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설 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14:10~17:00)
	사회 : 안석모 (정책교육국장)
	증언 : 북한이탈주민
	차기정부,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
14:10~16:50	▶ 주제 1 :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 - 발제 :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 토론 : 정학진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한명섭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주제 2 : 차기정부 북한인권 국제·외교적 과제 - 발제 :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 토론 : 제성호 (중앙대 교수) 안찬일 (국민희망 서울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주제 3 : 차기정부 북한인권 시민사회 과제 - 발제 :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 - 토론 :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원웅 (관동대 교수)
16:5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	폐회

주제 1 |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 / 1

◎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 / 3

발제 :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토론 : 정학진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 23

한명섭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29

주제 2 | 차기정부 북한인권 국제·외교적 과제 / 37

◎ 국제·외교적 과제로서의 차기정부 북한인권정책 / 39

발제 :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토론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51

안찬일 (국민희망 서울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55

주제 3 | 차기정부 북한인권 시민사회 과제 / 61

◎ 제18대 대선후보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및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황과 평가 / 63

발제 :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

토론 :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95

이원웅 (관동대 교수) / 97

주제 1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

- ◎ 발제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 ◎ 토론 정학진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한명섭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1. 문제의 제기

지금 세계 최악(Worst of the Worst, 2012 프리덤 하우스)인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의 3대세습 이후에도 개선조짐이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3. 22.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최초로 투표 없이(without a vote)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에서는 찬성국이 계속 증가하여 7번째 채택된 2011. 12. 19. 제66차 총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찬성국이 많았고 반대국 및 기권국은 적었다(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

나아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의 제소 등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¹⁾ 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9. 13. 제6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기관(more detailed mechanism of inquiry)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보고서 제13항 참조)

또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등을 위해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제정하였고, 2008년 위 법의 시한을 2012년으로 연장하였다가 다시

1) 유럽연합(EU)의회의 2010. 7. 8. 스트라스부르 총회결의를 비롯하여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인권감시기구(HRW), 국제인권연맹(FIDH) 등 세계적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유엔차원의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2017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하여 지난 8. 16.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 6. ‘납치문제 및 그 외의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7. 7. 개정하여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에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되었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는 야당에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제출하여 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절충이 모색되었으나 실패하였다.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 6. 1.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6. 15.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8. 20.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 9. 5. 조명철 의원(새누리당) 등이 연이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측 대통령 후보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동안 제출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참고하면서 과연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우리사회 내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화’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안이 되려면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²⁾

2. 북한인권법의 제정 필요성

가. 찬성론

(1) 헌법상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대법원 1996. 11. 13.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국가(대한민국)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

2) 이하 필자가 2012. 9. 18.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북한주민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안의 바람직한 제정방향’ 원고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과 가치를 가지는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조건이고, 동포애의 발로이기도 하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우선 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인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³⁾

(2) 인권의 보편성

오늘날 인권문제는 주권국가의 영역을 넘는 보편적 관여사항이 되었다. 1993. 6. 25.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s)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장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선언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유엔의 자유권규약(ICCPR), 사회권규약(ICESC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유엔 회원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입법으로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법상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나. 반대론

(1) 남북관계 마찰 초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의 마찰과 경색을 초래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교류·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길이다. 북한인권법은 대북 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이는 단체들을 지원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뼈라살포법에 불과하다.

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제9조 제1항)”고 선언적·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2)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여러 가지 형태의 협정과 합의, 그 중에서도 1991. 12. 23.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고, 제2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위 남북기본합의서에 반한다.

(3) 인권개선의 실효성 전무

미국·일본이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북한인권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시하는 북한인권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실효성이 없으며, 이들 조치는 굳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기조로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

다. 소결론(반대론에 대한 반박)

(1) 남북관계 마찰론에 대한 반박

세계적으로 인권침해 국가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이 해당국가의 인권을 악화시킨 예는 없다. 남아공의 apartheid, 구 소련의 공산독재, 미얀마의 군사독재 등도 모두 국제사회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해 인권침해가 종식되었거나 완화되었다. 북한도 그 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응하여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제8조에 “인권보호 규정”을 삽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북한의 주인은 대다수 북한주민이고 북한의 억압정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가해자와의 마찰을 염려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처사라 할 것이다.

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안 되는 것은 남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부정보의 차단을 체제유지의 핵심요소로

삼고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인권 민간단체들을 모두 빼라살포단체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북한인권 인식개선 사업 등의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는 분명 지원필요성이 존재한다.

(2) 남북기본합의서 위반론에 대한 반박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특정 국가 사이의 합의나 계약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 24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일방적으로 2009. 1. 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바도 있다.

(3) 실효성 전무론에 대한 반박

북한인권법은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그 내용을 만들자는 것이므로 제3국의 예를 들어 북한인권법을 시행해 보지도 아니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 정책 담당자의 실행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법치국가에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정책기조만으로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한 정책의지 마저도 명백한 법률근거가 없다는 구실로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등 북한인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인원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⁴⁾ 동서독 분단시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비록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지만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그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과는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인권위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인권 예산이 2012년도 279백만원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210백만원으로 삭감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미 북한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⁵⁾ 그러므로 북한지역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의미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권형에도 맞는 조치라 할 것이다.

다만 명분만을 내세운 법률 제정이 아니라 인권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붙임] 〈북한인권법 주요내용 비교〉와 같이 이번 제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 조명철 의원(새누리당)과 제18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의 각 법률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 바람직한 제정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법의 제정 방향

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또는 인도주의자문위원회의 설치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의원(이하 윤상현 외 3인이라 하고, 윤상현 의원 안을 중심으로 고찰함)의 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가) 법안 규정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전문가 중

5)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납북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며(안 제5조),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6조 제1항, 제2항).

북한인권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은, 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②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③ 북한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④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⑤ 그 밖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안 제6조 제1항).

(나) 문제점 검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소정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등에 대응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인권 개선사업은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게,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으로는 특히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증진방안은 윤상현 의원 법안 제6조 제1항 ②호의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항목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본적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은 고립된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자유로운 정보를 전달하여 그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자주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12. 6.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말 한국에선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시대가 끝남으로써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가 예견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독정부는 이미 1970년대 이후 동독주민들의 서독방송 및 TV 시청을 허용해 왔고 이것이 동독혁명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북한 주민은 NTSC방식의 남쪽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외국산 TV로 몰래 한국 TV방송을 시청해왔다.⁶⁾ 그러나 한국의 TV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이제 남쪽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북쪽 주민이 최신 디지털TV나 수신 장비를 구하기는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간첩 색출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⁷⁾

(2) 인도주의자문위원회

김동철 의원의 안은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법안 규정

북한인권증진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수로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안 제6조).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담당 기구를 두고(안 제5조 제1, 2항), 그 중 인도적 지원 담당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제3항).

1.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간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추진
2.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3. 북한 주민들의 생활유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류,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 제공과 이에 관한 교육 지원

6) 남쪽의 방송 전파는 육지로는 평양까지, 산이 없는 서해 바다 연안에선 신의주까지 간다.

7) 2012. 11. 12.자 동아일보 참조.

4.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활동
5. 국내의 각종 기관·단체들이 행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북한간의 인도주의 사업 또한 인도적 지원 담당기구를 설치(안 제5조)

(나) 문제점 검토

① 위원회의 명칭을 ‘인도주의자문위원회’라고 하고 그 담당업무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활동 등 순수한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광범위한 대북지원 업무에 편중하여 사회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은 같은 법안 제7조에서 설치하기로 한 인도주의정보센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자유권, 사회권 등 모든 권리의 ‘공통성,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인권의 근본적 성격은 1993. 6. 25. 유엔의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재확인 된 바 있다. 즉 위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제2부 3절은,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실제 북한에서는 사회권 침해 못지않게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 자유권을 비롯하여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1조, 자유권 규약 제25조) 등 모든 인권의 침해가 심각한 것임은 그 동안의 유엔총회 대북결의안에 잘 나타나 있다. 단적으로 식량권에 대해서 보면, 북한의 집단적인 기아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마르티아 센(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식량 구입할 돈을 무기구입이나 독재자의 치적 과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 공정한 배분(entitlement)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언론의 자유나 참정권 등의 부

재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둘째, 법체계상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경제지원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등에 의하여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⁸⁾ 또 『남북교류협력에

8) 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에 의하여 ‘남북교류 협력 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⁹⁾ 그런데 또 다시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중복업무의 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셋째,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교류확대가 북한의 개혁·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에서 추진되었으나 대북지원의 대부분은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 거기에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발사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의 대남 도발이 겹치면서 남북경색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¹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두 개의 계층으로 분류됐다. 당과 군에서 충성세력으로 남아 있는 배급계층과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시장계층이다. 대북 지원 식량은 시장계층인 주민의 식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량이나 통치권인 배급계층, 즉 충성계층으로 돌아갈 뿐이다.¹¹⁾

독일통일을 이룩한 서독정부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대동독 지원이 동독 공산정권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했다.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시에는 i) 동독이 먼저 요청을 했을 때, ii) 반드시 대가를 받은 후, iii)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지원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세 가지 원칙을 고수했다.¹²⁾

순수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한다.¹³⁾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이 2012. 4. 15. 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며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하므로 그런 기대감을 존중하고 유연해질 필요는 있으나 대북지원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② 다만 김동철 의원 법안이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간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담당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토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전후 납북자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10) 한때 김정일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다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마저 북한을 향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1) 장진성 탈북시인, 2011. 7. 26. 동아일보

12) 염동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평화문제연구소 2010), 130, 365면 참조.

13) 윤상현·황진하·이인제 의원 법안 참조.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각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진척은 별로 없었다. 업무진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

나.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설치¹⁵⁾

법안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안 제7조)고 되어 있다.

본격적인 북한인권 관련 국제활동을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비상근직이 아니라 상근직으로 하여 북한인권대사 업무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미국도 종전 북한인권법 하에서는 북한인권대사직을 비상근(part-time)으로 하였으나 2008. 개정된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대사직을 상근(full-time)으로 하여 Robert R. King이 임명되고 사무실 및 직원까지 구비함으로써 북한인권 관련 대외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1) 법안 규정

윤상현 외 3인의 법안에 의하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이인제 의원 법안 제14조에 의하면,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인권위원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인제 의원 법안도 같은 취지.

15) 윤상현 외 3인의 법안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윤상현 의원 안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 타당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일제 식민지배시기, 한국전쟁시기, 권위주의 군사정권시기에 유린되었던 인권을 치유하겠다는 과거 청산작업의 일환으로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2005. 5. 31) 등¹⁶⁾을 제정·시행하였다. 한편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하여 주요 인사들을 한꺼번에 구속기소하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재판이라는 “12·12, 5·17, 5·18 사건”(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유린은 그보다 훨씬 큰 반인권범죄에 해당하므로 추후 그 청산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만행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소정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무언의 경고를 통하여 억제하고 그 청산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속히 서독의 Erfassungsstelle(중앙기록보존소)와 같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기록의 민족답게 그 만행을 낱낱이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에서도 동독에 대한 인권정책을 둘러싸고 방법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인식 차이가 있었으나,¹⁷⁾ 중앙기록보존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만은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동독이 1961. 8. 13. 베를린 장벽을 건설해 동서 베를린을 차단하자 서독은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동독의 비인도적, 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함으로써 향후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로 같은 해 11. 24.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잘츠기터(Salzgitter)시에 중앙기록

16) 그 밖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1. 1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0. 1. 15),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02. 1. 26) 등이 있다.

17) 보수진영(기민/기사)에서는 서독의 기본법을 잣대로 동독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재단하여 동독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진보진영(사민당)에서는 동독의 인권 개선에는 상호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동독의 자유화와 인권개선의 길을 점진적으로 모색하자는 입장이었다.

보존소(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의 설립은 1961. 9. 1. 기민당(CDU) 연방하원 의원이었던 블루멘펠트(Erik Blumenfeld)가 제안하고,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사민당(SPD) 소속 빌리 브란트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¹⁸⁾

(3) 설치기관 등의 문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북한 내의 인권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낱낱이 수집·기록·보존되어 장차 통일 후 형사소추되거나 인재등용, 피해자 보상 등 광범위한 인권정책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줌으로써 인권침해를 자제토록 하자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적기능에 비추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당연히 국가기관 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기관 내에 둘 경우, 윤상현 의원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에, 황진하 의원의 법안에는 법무부에, 이인제 의원 및 조명철 의원의 각 법안에는 인권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북한인권재단에 설치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민간 기구에 설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윤상현 의원 법안 제11조 제3항), 예민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북한의 협상파트너인 통일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 부적절하다.

다음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1961. 설치된 서독의 Erfassungsstelle도 범죄수사기능이 있는 법무부 산하에 두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1991. 10. 유엔의 “파리원칙”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인권위 제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 북한 당국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민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행정부 산하의 법무부에 둘 경우 북

18) 김동명,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이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선진통일당 2012. 7. 24.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25면, 28면.

한으로부터 내정간섭 내지 주권침해라는 공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독 정부도 1990. 통일될 때까지 30년간 내내 동독 정부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북한의 인권침해 자료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의하여 수집하여 훗날 그 인권침해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 인권침해가 남한이나 북한의 국내 형사법에 저촉되어서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반인권범죄의 저지업무는 준국제기구 겸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담당하는 것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외교적 마찰도 최소화 할 수 있어 더 좋다 할 것이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인권위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2011. 3. 15. 설립하여 금년 5.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또한 신규입국 탈북자들¹⁹⁾에게 실시하는 합동심문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들로부터 입국초기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신고센터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북한인권침해기록을 통해 과거청산을 위한 기초적 준비작업을 하게 한 다음, 통일 후 이를 법무부나 검찰에 이관하여 보완수사를 하고 소추케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²⁰⁾

라. 북한인권재단의 문제

(1) 법안의 규정

윤상현 의원 외 3인의 법안은 통일부 장관 산하에 통일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민간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윤상현 의원 안 제11조),

19) 탈북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들로서 이들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20) 처음 북한인권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위에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2005. 8. 11. 김문수 의원 법안, 2008. 7. 4. 황우여 의원 법안, 2008. 12. 26. 윤상현 의원 법안 등이 그것이다.

- ①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
- ③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 ④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 ⑤ 북한 인권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⑥ 북한 인권 관련 남북 접촉 및 교류협력
- ⑦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 ⑧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같은 안 제10조).

(2) 문제점 검토

위 법안의 입법취지는 민간기구인 재단을 통해 북한인권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북인권정책을 두트랙(two track)화 하여 북한의 반발을 완화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첫째, 재단이 수행할 사업은 법안 자체에 의하더라도(같은 안 제5조, 제6조) 이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다시 방대한 예산을 들여 이중으로 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중복되는 과정을 거쳐 사업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의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기구와 다름없으므로 재단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재단의 행위를 통일부의 행위로 보아 반발할 것이고, 민간기구를 통해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자는 당초의 입법취지는 퇴색된다.

셋째, 북한인권재단의 기본 성격은 민법상 재단법인인바(같은 안 제11조 제5항), 이러한 재단에 직접 고도의 인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요하는 정책개발·조사·교육 등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모델이 된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도 기본적으로 민간 인권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게 주된 과제이지, NED가 나서서 어떤 인권운동이나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 (나) 그러므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재고되거나,²¹⁾ 설립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미국 NED의 경우처럼 재단의 성격에 맞게 북한인권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²²⁾ 또한 재단으로 하여금 북한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제대로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체험관’ 내지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이인제 의원 법안 제 11조 제3항 참조). 독일이나 이스라엘의 Holocaust 기념관 등이 참고가 될 것이다.

마. 그 밖의 문제점

그 밖에 윤상현, 황진하, 조명철, 김동철 의원의 각 법안은 북한인권 관련 특별법임을 자임하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정의조항을 누락하고 있고(이인제 의원 법안 제2조 제1호는 ‘북한인권이라 함은 북한주민등의 인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국가”용어의 무분별한 혼용을 하고 있다. 보완과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이라 하겠다.

21)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존 인권관련 법규의 활성화 또는 보완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권위법 제19조(업무) 제8호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인권위의 업무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법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지금 북한인권단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단체들의 고유역할(북한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방송과 정보제공, 북한인권 백서 발간, 북한인권교육 및 캠페인, 북한인권 국제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및 탈북난민보호 등)에 따른 자금지원이지 그들의 종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기관의 설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결 론

국제사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등 주변국도 북한인권법의 시한 연장 등을 통해 개선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방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유력 대선후보들조차도 그 중 일부가 인권존중을 표방하며 천문학적 지출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 가장 열악한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總論的)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론적(各論的) 디테일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정책의지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조속히 최대한의 공약수를 집약하여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참혹한 인권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희망을 줄 시대적 사명이 있다 할 것이다.

[붙임]

〈북한인권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윤상현(새)	황진하(새)	이인제(선)	조명철(새)
공통사항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통일부) 북한인권대사 설치(외통부) 북한인권재단 설립(통일부) 북한인권 교육 및 홍보(통일부)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 (10조)	법무부 (12조)	국가인권위원회 (14조)	국가인권위원회 (13조)
법안별 특이사항	18대 제출법안과 동일	18대 제출법안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에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획단 설치 (7조) •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15조) • 북한인권재단 기능을 북한인권 체험관 설치,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한정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침해 인권위 신고 조항 명문화(12조) • 필요한 경우 ICC 제소(12조) • 남북간 인권대화 단계적 추진 (15조) • 국내외 민간단체 지원(16조)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학진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1. 발제문과 관련하여

북한정권은 21세기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최악임에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유엔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제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17대국회와 18대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차기정부의 북한인권을 개선하고자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들을 참고로 인권법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시고 다년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어 오신 김태훈변호사께서 검토하신 발제문이 잘 정리가 되었고 대부분 공감에 갑니다.

발제자께서는 인권법제정을 통한 제도적과제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도 차기정부에서 제도적과제에 대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구체적인 견해에 대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궁금하거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발제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2. 의견제시

가. 입법제정과 병행하여 대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하여 대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 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환기, 우리 국민에 대한 인식변환, 통일교육에 북한인권교육을 포함시키거나 교과서에 포함시키거나 장병들의 정훈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연령별, 기능별, 기관별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학생, 청년층, 장년층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인권개선이 필수요건임을 교육 및 홍보활동, 3.1.절, 6·25, 천안함포격기념, 북한자유주간, 인권옹호의날 등 각종행사나 대회를 통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안에서 북한인권 ‘체험관’ 내지 ‘박물관’의 설립·운영도 이러한 취지로 보여 지나 법률로 제정할 필요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 외국어백서발간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북한인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시 찬성국이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나라가 적지 않고 이들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국가가 많은데 북한인권백서의 영문판만을 발간할 것이 아니라 불어판, 스페인어판, 아랍어판 등을 발간하여 북한인권의 실상을 아프리카, 아랍권 등에 제대로 알림으로써 찬성으로 유도하고 북한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내외 인권단체들 중 일부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인력과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여성, 노숙자 등에 못지 않게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인권단체들이 스스로 특

화, 전문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관련유관기관인 외교통상부, 통일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 인권단체들이 인턴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부족을 다소 해결하고 있지만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지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나 유엔, 스위스등에서의 국제활동을 위해 대외적인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이 절실한 실정이며, 외교통상부의 협조, 대한변호사회의 도움을 얻어 좀더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국제인권단체인 반인도조사위원회가 2009. 12. 10. ICC에 김정일, 윤△△, 백◇◇, 주○○에 관한 집단학살(로마규정 제6조), 반인도범죄(제7조), 전쟁범죄(제8조) 등의 혐의로 북한반인도범죄조사요청제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0. 11. 5. ICC로부터 “ --- 이런 혐의들이 ICC의 관할권 범위 밖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검사는 현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속자모녀의 경우에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바, 무조건 제소할 것이 아니라여러가지 국제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할권이 없을 경우 제소의 필요성, 국제적인 여론조성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 의문점에 대한 질의

가. 북한인권자문회의의 역할과 관련하여 통일부에 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나. 발제자께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재고하거나 설립하더라도 그 업무는 미국의 NED의 경우처럼 재단의 성격에 맞게 북한인권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자문회의사이에 업무구분이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북한인권자문회의의 적절한 운용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설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발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 토론자는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만이 아니라 향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제자의 견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현재상태로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범죄사실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중립적 기관에서 인권위원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법경찰관 등을 파견받아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 19대 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포함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세미나,토론회, 탈북자복송 저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17대국회와 18대국회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기정부에서 북한인

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 국제인권단체, 국내인권단체, 학계, 등과 협의하여 체계적, 지속적,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발제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민간자원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인권활동에 명분에 맞고 역량강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등에서 국내 또는 국제인권단체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많이 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업에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발제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명섭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1. 서언

발제내용은 현재 19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북한인권법안과 18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김동철 의원의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총론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찬반양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반대론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각론에서는 위 각 법안의 핵심사항인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인도주의자문위원회, 북한인권대의직명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설치 문제에 대해 각 법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설명하면서 발제자의 개인적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피력함으로써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거의 빠짐없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 위 각 개별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측면뿐 아니라 업무의 중복여부와 효율성, 예산낭비, 북한과의 마찰 우려 등 실무·정책적 측면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발제자의 접근방법에 동의를 하면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견과 기타 보충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의 출발은 남북한의 상반된 입장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인권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라는 법 제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대체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찬성론자와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우려와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갖는 반대론자의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는 명분과 실리의 다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반대론자들의 입장도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의 상대성¹⁾과 인도주의적 간섭론²⁾에 대해 동조를 하지 않는 이상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굳이 별 실효성도 없는 법을 제정하여 남북관계를 결끄럽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론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 제정의 명분과 더불어 법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제법적으로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인도적 ‘무력개입’이

1) 북한 『대중정치용어사전』(1957)은 인권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조선말대사전 2』(1992)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라고 정의하여 주체사상 제일의 인권관인 자주성을 반영하고 있다. 헌법을 보더라도 2009년 4월 개정 헌법 제8조에서 근로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보호한다며 인권존중에 대한 규정 신설하였지만, 제6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에서는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국가와 민족 우선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자유권 제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2) 인도주의적 간섭론 : 제국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를 비롯하여 세계진보적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주장. 인도주의적 간섭론의 기본내용은 한 나라에서 개별적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과 같은 비인도주의적 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국제법학자들의 이론적근거는 유엔헌장에 인권존중이 국가관계 원칙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엔헌장에는 인권분야에서 국제적 협조를 실현할 데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권문제가 철저히 국가의 내부관할권 문제라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존중을 위한 국가들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국가자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들의 내정간섭의 구실로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국제법사전』(사회과학출판사, 2002), 568쪽.

정당하나 아니냐의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개입이 아닌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의 차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제정의 필요성을 전제로 “바람직한 제정방향을 검토하여야”한다는 발제자의 접근은 말 그대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에 대한 의문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의 주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견 내지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국회 발의 4개 법안은 모두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발제자 역시 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인권 개선사업은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게,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한 것이라며 찬성을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발제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북한의 협상파트너인 통일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도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기구와 다름이 없으므로 재단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재단의 행위를 통일부의 행위로 보아 반발할 것이고, 민간기구를 통해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지는 당초의 입법취지는 퇴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발제자의 견해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첫 번째는 발제자의 의견은 북한의 협상 파트너인 통일부와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나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정확하게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에 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 위 위원회 역시 북한과의 마찰 우려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두 번째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설명에서 “민간기구를 통해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자는 당초의 입법취지”란 표현은 결국 북한인권법의 제정취지가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4개 법안 내용은 대부분의 관련 위원회나 재단을 정부 기관 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제자 역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자는 의견이어서 역시 “민간기구를 통해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자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세 번째는 정부조직법 제26조(통일부)는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4개 북한인권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구의 내용들이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물론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북한 인권 문제 역시 통일부의 업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북한인권”이란 용어에서 방점을 북한에 두느냐, 아니면 인권에 두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라는 분단상황과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법 제정의 취지중 하나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이고, 북한의 협상 파트너인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면 굳이 북한인권법과 통일부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지, 나아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역시 통일부 산하에 조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발제자의 의견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과 같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취지가 북한인권문제를 민간 기구에 맡기자는 취지인지, 만일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을 보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관한 문제는 우선 위 기구를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민간기구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발제자 견해에 찬성한다. 다음으로 위 기구를 국가기관에 둔다면 통일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 인지의 문제이다. 발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자는 의견이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관할 문서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된다고 본다. 즉 해당 문서가 통일 이후 북한 관료 등의 사법적 불법청산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의 사망 등에 대비하여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증거자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작성의 문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검사 작성의 문서라면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통일 이후의 불법청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사례 수집과 분석,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추구 등 통일 이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나아가 위와 같은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목적이 위 두 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불법청산을 위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기 위해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 형태의 문서 작성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서작

성에 검사가 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무부에서 관장한다면 통일 이전에 추진해야 할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촉구 등의 업무를 법무부가 적극 관여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용도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검사가 작성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고, 발제자의 의견과 같이 통일 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하면서 자료 활용을 하다가 통일 이후에 법무부나 검찰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에 대하여 발제자의 설치 반대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첫째,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별도의 인권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의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단순 자문위원회의 업무와 재단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어떤 면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지는 것이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반대하면 별도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셋째,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역시 통일부 산하 기구와 다름이 없어 민간기구를 통한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지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직접 통일부에 설치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에 대한 북한과의 마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 기타

인도주의자문위원회에 대해 업무중복의 혼란과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대하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19대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국회 발의 4개 법안 관련 검토를 요하는 기타 사항

국회 발의 4개 북한인권법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아래 사항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 가.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의원의 법안에는 인도적 지원 원칙 준수 노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조명철 의원 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인도적 지원 원칙 준수노력에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나. 다른 3개 법안에는 없고, 오로지 조명철 의원 법안에만 있는 내용으로 북한인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및 국제형사재판소 제기에 관한 규정(제12조), 북한 내 민간인권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제9조 제3항 제5호), 북한 민간인권단체의 활동 보장을 위한 북한 당국과 대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이 있다. 이들 규정 중 특히 북한 내 민간인권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북한인권 관련 기구를 대북 협상파트너인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규정을 북한인권법에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 다. 발제 내용에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대상에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제 의원 법안을 보면 통일부장관의 북한주민의 정보접근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제15조)이 별도로 있는데, 이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고려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치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신 발제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하여 “바람직한”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 2 차기정부 북한인권 국제·외교적 과제

- ◎ 발제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 ◎ 토론 제성호 (중앙대 교수)
안찬일 (국민희망 서울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국제 · 외교적 과제로서의 차기정부 북한인권정책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1.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던 한국외교

2003년부터 수년간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대표단은 기권이나 투표불참을 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한국외교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야 유엔 인권위원회를 강화발전시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나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의 그렇게 창피한 사례는 2005년부터 국회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반대했던 행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국 내 인권 문제의 중심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전원회의의 10여 차례 비공개토론을 거쳐 2006년 12월 11일 발표한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더 강조하는 시대역행적 입장을 취한 것도 마찬가지 상황을 반영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다른나라의 국내 정치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인 결례”라고 까지 말했다. 마치 유태인 학살을 알면서도 나치정권을 비호하는 것과 같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실태를 알면서도 일본의 주권사항이니 우리가 간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사고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조

금만 알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차기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2천만 명의 북한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과정에도 연계된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에도 주변국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 한국사회와 인권의식

본래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양사회에서 절대 왕권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 그렇게 피를 흘려서 쟁취된 가치가 한국사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과 1948년 5·10 선거에 의한 제헌의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채택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미국독립선언과 프랑스인권선언의 기본정신과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조항을 도입하고 3권분립 체제를 확립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시대나 그 이전의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자유인권사조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긴 했으나, 그 후 자유선거로 선출된 민주당정부의 무능력과 혼란은 결국 5·16 군사쿠데타를 부르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개발독재의 방법으로 조국근대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우리의 헌법상에 보장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되었다.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중산층이 확대되었고, 드디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업적은 2차 대전 후 탄생한 140여개 신생독립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선진사회의 자유인권사조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소화하지 못한 면이 있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자유선거가 시행되고 관권에 의한 선거부정이 없어질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발전하였으나, 합

리적 토론과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성숙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걸핏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폭력행사나 파행사태가 일어나고 장외 투쟁이 벌어지고, 목소리가 커야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원인이 있다.

많은 경우에는 남북간 첨예한 대립구조가 남한사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은 비정상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 인권이야말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심지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주역이었다고 하는 민주투사들이 그 당시 인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인권의식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와 사회내 이념대립을 인권의식의 미성숙과 북한인권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핵심적 이유로 들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이유들을 더 찾을 수 있다.

우선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관련부서의 인권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전까지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원고석보다는 피고석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75년 미국의 카터대통령의 인권외교의 중심 타깃이 되었고 주한미군 철수 안까지 나오게 되었다. 심지어 일당독재의 인권침해국가인 북한마저도 1981년 두 개의 인권규약(1966년 채택)에 가입하고서 남한사회의 인권문제를 비난하였다. 그에 앞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서명된 주요협약 중 하나였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 교섭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단은 유엔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문화과정에 있던 2개의 인권규약(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초안과 같은 기본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분단상태의 신생독립국으로서 인권분야에 전문인력이나 경험을 축적할 여유가 없었다.

이에 더하여 인권분야의 시민단체(NGO)들의 활동도 미미하였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있던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봉사정신(volunteer spirit)은 어느 의미에서는 사치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체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배양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지도자의 북한인권 외면 지시에 무책임하게 따르기만 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체제하의 보편적 인권

북한인권문제의 중요성을 다루기 전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 문제가 어떻게 진화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 30년 전쟁 후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 개별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국제사회질서가 탄생하였다. 개별국가는 영토와 국민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고, 따라서 타국은 이에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 한세대 만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연합국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행태가 그러한 전쟁의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헌장 제1조는 유엔의 목적을 국제평화안전 유지, 국가간 경제협력, 인권의 보호증진의 3가지로 규정하였다. 평화안전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가장 강하게 한데 비하여, 인권증진 의무는 그 당시 주요국들이 굴라그, 식민지, 인종차별 등의 약점들 때문에 미흡한 상태였다. 그러나 인권과 기본적자유의 준수와 보편적 존중을 촉진할 유엔의 의무와 회원국들의 인권신장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개별국가의 배타적 국내관할권(exclusive domestic jurisdiction)주장을 부인하고 인권의 국제화 걸음을 시작하였다. 미진한 상태였던 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유엔을 중심으로 성문화(codify)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경위를 거쳐, 유엔인권위원회의 작업을 통해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이 선언 내용을 조약화하기 위한 교섭이 18년 동안 진행되어 1966년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2개의 규약이 채택되었다. 그와 함께 유엔은 창립이후 집단살해금지조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금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을 채택하였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죄와 같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통치자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실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동경재판,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 르완다 전범재판이 이루어졌고, 2002년 7월에는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도 설치되었다.

아직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절차가 국내 법질서유지에 비하면 불완전하기 짝이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공공연하게 통용되던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근거로 국내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를 부인하던 체제는 바뀐 것이다. 이야말로 인권의 보편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언급한대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정신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2005년 유엔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서에서는 국가의 주권(sovereignty)을 국민에 대한 우월적 특권(privilege)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으로 인식하였다. 집단살해, 인종청소,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태가 발생할 경우 안보리 결의에 따라 폭압적 정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게 되었다. 실제 2011. 2. 26. 유엔안보리는 카다피 정권이 일반시민을 학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결의하였고, 카다피 정권은 결국 몰락하였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2012. 2. 5.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행사 때문에 부결되었다.

4.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해결방향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아직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고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 투사였다는 인사들도 자신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격렬한 투쟁을 해왔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통용되던 국가의 절대주권이론을 내세워 북한정권의 인권탄압까지 비호하려 한다.

물론 남북한 간에는 인권문제 이외에도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인권문제로 너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다른 현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야 말로 너무 순진한 것이다.

남한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선진국가들도 인권문제에서 완벽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북한, 이란, 수단, 소말리아 등 몇 개 나라는 인권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사정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발생한 수만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인권침해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6개의 강제수용소에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 구금되어 있고, 고문, 임의적 구금,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같은 동포로서도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립해온 유엔체제하의 국제법 질서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인권침해상황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할 경우 카다피 정권에 대한 안보리결의와 같은 제재조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엔인권보호 메커니즘에 따르거나, 개별국가가 가입한 인권협약상의 절차에 따라 해당국가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심사와 권고가 행해진다. 이러한 구제절차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의 침해사실에 대한 지적을 통해 해당국가가 창피를 느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반복적인 지적을 통해 창피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naming and shaming). 문명국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독재체제의 인권후진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관심을 표시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사회보다는 국제사회가 더 쉽게 인식할 수도 있다. 특히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한층 높아졌다.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가해야 하지만, 북한정권이 체제불안을 우려하여 매우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쩌면 북한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제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결과로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탈북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자는 중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하여 매년 5천명 정도를 강제송환시켜 왔다. 송환되면 그들은 북한당국으로부터 고문, 구금, 공개처형 등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중국이 난민조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금년 2월14일부터 100일 이상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재중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집회가 국제사회의 전폭적 호응과 지지를 얻은 것은 중국에게는 매우 난감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2012. 9. 14)를 통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이 확실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경제적 이주자로 보지 않고, 출신성분에 의해 차별받는 ‘난민’이거나 사후적인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이라고 정의하였다.

중국대사관 앞 시민단체들의 집회의 특징은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에 대하여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애걸하던 자세에서 중국이 가입한 난민조약상 의무를 지키라고 권리로서 요구하는 자세로 방향전환을 한 것이다. 당분간 중

국정부의 심한 단속과 북한의 특수부대의 국경배치로 인해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자의 숫자는 반감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압력을 무시하고 강제송환을 계속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G-2국가로 격상된 중국의 리더십에 손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도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탈북자 강제송환은 매우 어려운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박선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북경올림픽 직후인 2008년 8월 25일, 26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34개 항목의 합의를 이루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에게 재중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34개 합의사항중 제32항에는 국제인권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중국대사관 앞의 강제송환반대집회가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하였다. 만약 그러한 적극적 변화가 없었다면, 김영환 인권운동가의 석방과 귀환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안정에 대한 배려 때문에 한국사회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중국정부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약상의 권리를 근거로 중국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접근 방법은 중국에 인접한 작은 나라로서 효과적인 외교수단이 될 것이다. 조공외교시대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도 국제적 체면문제를 고려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고,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노력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요컨대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그나마 몇 명이라도 탈북자를 구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제사회의 인권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다. 실은 그 배경에는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햇볕정책의 발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중국의 호감을 살 수 있겠지만, 자신의 권리도 제

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유약한 외교로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다. 결국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힘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오관을 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북경올림픽 당시 성화봉송사건, 중국어선들의 한국경찰 살해사건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태가 연이어 일어났다. 이를 두고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로 표현하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나 경제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종하는 자세는 한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간에 서로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에 따르는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이 총체적 경제력에서 한세대 안에 미국을 능가하여 세계제일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이 전 세계의 최첨단 문명을 주도해나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사회도 중국보다 앞서가는 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협력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5. 국제 · 외교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정책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목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끼리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는 선동논리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까지도 허용하는 것이라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은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를 닦는 일이다. 그러한 기초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정치적 합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짧은 민주주의 경험 때문에 인권에 대해 피상적 인식에 머물러 왔었고, 권위주의적 사회풍조 속에서 적극적 인권의식이 미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 중심으로 발전된 인권보호체제 속에서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에 쉽게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제는 한국사회도 선진화단계에 진입하였고, 여기서는 인권문

제에 관해서도 국제적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 한국사회 내부에도 많은 인권문제가 있고, 국제사회에도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쌓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시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문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지역안의 동포들에 관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북분단 상태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하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의 실질적 통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주요정책사항이 되어야 하며, 북한의 배타적 관할사항으로 치부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유린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이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면 국내적으로도 북한정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얻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주요한 이웃국가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 제3국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나 정부의 조사결과와 입장을 파악하여 유엔인권보호체제나 인권조약집행기구 메커니즘을 통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사회 안에서 시민단체들이나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시기에도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실태조사와 국제세미나 개최와 참여를 통해 국제여론을 선도해왔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선도해야 하지만, 한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북한주민이나 탈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득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사회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여타의 인권현안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동계획에 최근 북한인권분야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모든 중요한 인권문제는 빠짐없이 적절한 보호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과 중요성을 합리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이념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한국 내의 다른 인권문제보다도 월등하게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인권활동가들도 나치시대의 유대인 강제수용소나 소련의 굴라그보다도 북한의 인권침해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도 다른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문제에만 매몰되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너무 편협한 민족주의로 제3자의 눈에 비칠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사회안에서 3D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인권문제에 대한 배려가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높이게 되고, 당연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란이나 시리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사실확인과 검토를 거쳐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러한 국가들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지만 G-20국가인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인권문제에 대한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인권전문인력의 확충, 인권전문가의 소명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통일 후의 한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인권문제는 외교안보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 1975년 4월 베트남 통일로 인해 백만 명의 보트피플이 발생한 일이 있다. 일본은 행정지도를 통해 일본인 선장들이 보트피플을 일본으로 데려오지 않도록 종용하였고, 망망

대해에서 일본선박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다행히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던 베트남 보트피플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일본의 비도덕성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비인도적 자세가 결국은 선진국의 자격을 의심케 하였으며, 국제연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큰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당시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난민조약의 규정을 탈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품격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인권문제에 보다 충실하여 동북아의 인권보호의 중심국이 되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틈바구니에서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유익한 자산이 된다. 현재의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인권존중의 원칙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갈 때, 이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 안정과 정의를 세우고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 교통, 통신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와 인권도 당연히 발전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힘을 얻게 되는 길을 걸어왔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 군중들에게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고 외쳤을 때, 40여년 후 소수 유색인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났다.

북한인권문제도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인권과 정의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강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외교적 과제로서의 차기정부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토론문

제성호
(중앙대 교수)

■ 김석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의 발제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보완적 차원 혹은 토론자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북한인권문제는 ① 보편적 가치(인류보편의 가치)의 문제, ② 국제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기본시각에서, 첫째,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대북 직접 설득에 의한 해결 병행 추진(단기적으로는 전자에 우선적 비중 부여), 둘째,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노력 병행 등의 접근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함.
2. 차기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 전담부서 및 납북자 대책기구 설치, 국제공조 강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특히 식량권, 건강권, 피복권 등) 보장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 ※ 만일 정권이 교체될 경우, 지금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로지 ‘인권의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감시·견제 또는 보완하는 자세가 절실할 것임.
 - 한편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다소 인색했으나,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인도

적 지원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3. 북한인권 국제공조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와 산하 임의구금실무그룹 및 강제실종실무그룹,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고문특별보고관, 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유엔인신매매특별보고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대사, EU 의회 및 집행위원회 산하 북한인권 담당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연대를 지속·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조사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보고서 및 기자회견 등에서 동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
 - 아울러 NGO 차원에서 전개되는 유엔 총회 산하 북한반인도범죄진상규명위원회나 전문가위원회 설치 노력도 측면에서 직·간접의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임.

4. 2013년 중 실시될 2차 북한인권 UPR 및 중국 인권 UPR(북한과 중국은 모두 2009년에 1차 UPR을 수검한 적이 있음)을 철저하게 준비, 한국 정부와 NGO들이 북한인권 문제 거론 및 개선 활동에 주도적 역할 담당
 - 탈북자 강제복송, 공개처형, 반인도적 국가형벌권 행사체계 및 형사법 규범, 특히 2007년 제정 북한 형법부칙(비공개)의 반인권성 집중 제기
 - 1차 북한인권 UPR 시 북한은 117개 권고사항을 유념한다(take note)고 하였는데, 이후 북한이 어떠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개선조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함으로써 북한에게 정치적·외교적 부담을 대폭 가중시켜야 할 것
 - ※ 2009년 12월 북한인권 UPR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시 북한은 인권이사회의 총 167개 권고사항 중 50개 권고사항을 현장에서 거부(불수용) 입장 표명

5.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관련 국제 워크숍(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등을 카운터파트로 설정) 개최, 탈북자 강제복송 저지운동, 북한인권 관련 유럽순회 공연,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기타 북한인권 캠페인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처음 시도한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 보고서 발간 후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2차 보고서 발간 시 시정·보완 하도록 함.
 - ※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
7.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 인권교육과 함께 북한인권교육에도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할애해야 할 것임.
 -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및 개선 노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8.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 탈북자문제(특히 중국 체류 무국적 탈북아동, 탈북여성 인신매매, 탈북 브로커문제 등)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이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최근 재입북하는 탈북자들로 인해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수도 있는 바, 국민여론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가까이서 탈북자들의 신변보호 및 정착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탈북자 담당) 및 종교단체 등 NGO들과 유기적인 협력 및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내 입국 탈북자문제와 관련, 북한인권단체-종교단체 등 NGO들이 청소년 탈북자

의 학교교육 적응 지원(심리 상담)이나 야학 형식의 보충수업(주로 영어, 국어, 수학)을 실시하는 한편, 탈북 청소년 돌보미(주로 대학생과의 자매결연 형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9.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일부와는 달리 국군포로·납북자(전시 및 전후),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 해결을 추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권고하는 한편, 법이론적(특히 국제법적) 측면의 연구를 선도해야 할 것임.
10. 한국 사회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외에도,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관련 인권문제, 국내 입국 난민 신청자나 무국적자,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에 걸맞는 정책 추진, 제도적 개선, 당사자의 인권 개선 등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북한 인권에만 경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인권의 정치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북한인권법 채택은 국제·외교적 과제의 최우선 순위

안찬일

(국민희망 서울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1. 머리글

평소 북한 인권개선의 진두에서 항상 호소와 행동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는 김석우 차관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족을 단다는 것은 무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한 차관님과 북한 인권개선의 국제·외교적 과제의 전반적 시각에 의견을 함께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마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마당에 우리 국회가 아직 북한인권법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서글픔을 넘어 분노하게까지 만들고 있다. 왜 그런가. 대답은 명약관화하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여당마저 머뭇거리면서 북한인권법은 고통 받는 북한 2천 300만 동포의 고통을 좌시하고만 있다.

북한인권법 채택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그럼 북한과 전쟁하자는 말이나”고 항변하는데 그 분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묻고 싶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 전쟁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아예 북한을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것만으로 북한 인권개선의 압력으로 된다. 마치 유엔이란 기구가 있어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현상과 일치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을 의식하여 최소한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2. 국제 · 외교적 효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실상을 알리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주로 북한 인권상황을 외부소식통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조사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변함없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은 2011년 자료를 분석해 지난 4월 발표한 인권보고서(2011 Human Rights and Democracy)의 평가 내용과 비교해 올 상반기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외무부의 소피 벤저(Sophie Bengler) 공보담당관은 7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영국 정부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인권 개선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에서 민주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헌법에 따라 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등은 '우당'의 역할 외에 정당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2012년 봄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 '유럽연합-한국 인권담화'에서 앨리스테어 워커(Alisdair Walker)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영국의 한 대학에서 발간한 '고문안내서(Torture Reporting Handbook)'를 한국의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제공해 북한의 고문과 인권 사례를 폭로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버마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28개 인권우려 대상국(Countries of Concern)에 포함돼 있다.

3대 세습으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권력의 교체를 통해 '권위 가치'는 재분배되었지만 아래로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분야에서는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이 소수 특권층의 시장 점유율로 나타날 경우 보통 주민들의 생존권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김정은은 당장 정치범 수용소

의 축소 등 가시적 인권개선을 보여줄 수도 있다.¹⁾ 여기서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임명을 들 수 있다. 초대 김병하와 2대 이진수의 보위부장 과정을 거치며 국가안전보위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행세하면서 북한 인권탄압의 진원지로 떠올랐었다. 하여 3대부터는 아예 부장직을 두지 않고 제1부부장 체제로 운영되어 왔지만 김영룡 제1부부장이 권총 자살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기 어려웠다.

지난 4월 노동당은 전 군 보위사령관이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김원홍 대장을 우동측 제1부부장 후임으로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하면서 국가 공안통치망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였다. 김원홍은 군인 중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성품에 속하는 엘리트다.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 후견자인 장성택이 인민보안부장에 전 북한군 작전국장 출신인 이명수 대장을 임명한데 이어 김원홍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한 것은 군 위주의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사회공안망을 통해 정치체제를 안전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은 체제에서 공개적인 총살이나 처형 같은 적나라한 인권탄압은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정착되는 과도기에 능력도 돈도 없는 다수의 '사회주의 고아'들이 먹고 입는 문제인 생존권에서 또 다른 인권의 희생자로 균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깊숙이 평성시장과 국경의 해산시 등에 거지떼들이 몰려다녀도 당국이 마냥 방치하는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부사회의 지원 등이 북한 소외계층에 고르게 배분되고 질병과 재난으로 죽어가는 인민들의 없도록 북한 인권개선에 국제사회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 국내 및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인권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할 숙명의 과정이며 북한인권법은 그 도강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선물

1) 실제로 김정은 체제 등장 후 요덕정치범 수용소 등이 폐쇄되거나 축소 운영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으로 된다.

할 때 북한 인민들은 진정한 광복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면 북한의 진정한 제2의 광복은 요원하다.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소명과 권력을 왜 마다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대전의 전리품으로 얻은 광복시대를 맞이해 근대화 와 산업화, 민주화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어째서 거꾸로 가는 이 나라의 절반을 구하는 일에 피동적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한 인권침해의 가장 큰 이슈는 세계의 진화와 격리된 채 북한 주민 모두가 무지의 세계에 포박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무지는 자비로운 신이 하층민의 비참함을 덜어주기 내려주신 은총의 아편"이라고 했다지만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무지의 고통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

이제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의 초점을 상승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흔히 북한 인권하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을 집중 거론하지만 북한 지역 모두가 수용소이고 감옥이라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남북한의 문명차이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고 우리는 통일시대에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 되면 우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 북한 인권개선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북한 주민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형상한 요덕스토리가 미국 공연을 준비하였지만 예산문제로 무산되었다. 인권법이 통과되면 그런 단체에 우선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전 세계에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일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갈 데까지 간 북한체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앞서간 우리 문명이 어두운 북한 땅을 두루 비치도록 문화콘텐츠들을 생산해 저 암흑의 땅으로 공수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문화가치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의 가치들을 북한에 이식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도 하루 빨리 빛을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 가치, 이념, 성장비결은

향후 북한체제에 고스란히 이식되어야 할 소중한 본보기이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는 한 자루의 총을 구하고자 많은 독립투사들이 흘렸던 피의 대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가 풍요의 환각 상태에 매몰돼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세계를 뒤흔드는 국력을 놔두고 저 북녘 땅의 신음소리가 계속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자못 엄중하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외치면서 파퓰리즘과 지역주의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정신으로 되돌아가 북한 땅,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애환을 달래줄 생각부터 앞세워야 할 것이다. 고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주제 3

차기정부 북한인권 시민사회 과제

- ◎ 발제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
- ◎ 토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원웅 (관동대 교수)

제18대 대선후보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및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황과 평가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

1. 시민연합의 제18대 대선후보 북한인권정책 공약요청 배경과 취지

북한정의연대·북한민주화위원회·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50여개 북한 인권 시민단체는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을 결성하고 지난 6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8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 대선후보에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선 공약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이 채 남지 않았었고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뚜렷하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의 많은 현안들을 정리 검토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문제까지 공약하는 것은 좀 아 니듯 싶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크고 많은 일들이 한반도를 강타하였고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라면 이러한 문제를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있어왔다. 특히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가 아닌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데 김정은의 세습집권 전후로 김정일 집권시기와 버금가는 박해와 처형이 있었고 탈북자를 처형하고 일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도 북한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비단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사회의 보편적 문제이며 방치해서는 안 될 인류 양심의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주민의 자유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좌우 진영논리,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가치기준, 각 정당의 노선까지도 초월해야 하고 의회,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이 일치하여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인권문제는 국적, 종교, 지역, 피부색, 나이, 성별, 신분을 넘어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와 어젠다로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줄여나가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서 외부에서 취해야 할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조차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인권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강령에 ‘북한인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고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였다.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 때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기로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와중에 지금 출사표를 던진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은 삼인일색(三人一色)이 되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동의라도 한 것처럼 침묵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견해를 밝히지를 않았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뤄야 할 북한인권문제는 통일·외교·안보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며,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들이 아무런 의지표명이 없이 그냥 덮어버리고 갈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북한주민을 위한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은 선거가 임박하기 전 각 대선 후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신속히 요청하며 북한인권 정책질의서를 보내어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정책공약을 수납한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또 북한인권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연후에 후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보충질의를 보내어 명확하게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공개할 각 후

보의 정책에 관하여 국민의 오해나 오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다.

제18대 대선 각 후보에게 보내는 북한인권정책 공약요청 및 질의서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 후보의 의식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투표에 임하기 위함이다.

금년 말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의 대통령이나 국가의 수장이 바뀌게 된다. 그 중 우리나라 대통령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통과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시민연합은 각 후보들에게 북한인권정책 공약요청서와 질의를 각 후보캠프에 전달하고 답변을 취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답변 제출기한 10일을 넘기고 지난 17일까지 취합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발표하게 되었다.

2. 제18대 대선후보 북한인권정책공약 요청서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는 북한인권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약하라!

발신: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

수신: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소속:

후보자명: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이하'시민연합')은 존경하는 귀하께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현장을 돌아보고 각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디 국민에게 약속하고 공언한 모든 정책들이 성실하게 잘 집행 되어서 국민의 불편과 민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귀 후보께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되어야 할 북한동포들의 고통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연합에서는 후보등록일 이전에 귀 후보께서 인지하고 있고 소속당이 표방하고 결정한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공약을 정리하여 표명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후보 등록일에 임박하여 공약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11월 10일까지)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연합은 각 후보자들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북한인권 정책공약 표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별도의 질의서를 첨부하여 보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 북한인권 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후 후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보충질의를 하여 명확하게 내용을 확정하고 각 후보의 정책에 관하여 국민의 오해나 오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18대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및 질의서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 후보의 의식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투표에 임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귀 후보를 통하여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나아지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초석이 될수 있는 좋은 정책과 공약이 천명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서에 기한 일까지 아래의 담당간사에게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남북대학생총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권청년학생 한국대학생포럼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 통영의딸구출 네트워크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정의로운청년연대 기독교사회책임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난민운동본부 세이브엔케이 피난처 남북사랑네트워크 기독교싱크탱크 북한인권기독교청년국제연합 북한개혁방송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NK지식인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자유북한운동연합 NK여성인권캠페인 NK에바다선교회 모퉁이돌 6·25남북인사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인권소위원회 북한인권개발학회 북한반인도조사위원회 북한반인륜범죄철폐국제연대 뮤지컬요덕스토리 남북자가족협의회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자유북한청년연합 자유북한방송 한기총북한인권위원회 기독교북한인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북조선난민구호기금 쉼들러리스트 남북포럼 탈북자종합지원센터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밝은인터넷운동본부 21C국가발전연구원 SLI(ServingLifeInternational) HHK(Helping Hands Korea) 북한통곡한국교회연합(KCC) 참회망미래연대 손과마음선교회

3. 각 대선후보의 10개 질의에 대한 반응과 답변 상황

북한주민을 위한 대선후보의 북한인권정책공약 요청과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을 기다리며 확인하는 동안 필자는 각 캠프의 정책팀들과 후보비서실과의 통화를 수십차례 하면서 이 질의서에 대한 후보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어떤 캠프의 사무실에는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이 질의서에 대한 후보의 확인을 확인하는 후보 보좌진들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각 캠프들은 매일 매일 공약을 쏟아내고 후보의 일정을 잡고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였다. 그래서 시민연합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여곡절을 겪고 얻은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는 답변을 그대로 정리하여 보았다.

17일까지 박근혜 후보는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고 안철수 후보측에서는 공약이 정리된 한쪽 자료를 보내왔다.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고 단일화 이후의 정책을 위해서 답변을 유보한 관계로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 박근혜 후보의 답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보낸 자료 참조

▣ 박근혜 후보의 답변-11월 17일 최종답변

▣ 문재인 후보-11월 17일 남북경제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되었으나 후보단일화문제로 답변 유보함

▣ 안철수 후보-11월 16일 안 후보의 공약집 224page를 참조하라는 답변과 참고자료 이메일

▣ 이정희 후보측-질의 이멜을 14일 최종확인 했으나 이 질의에 관하여 NCND 하겠다. 북한인권 개선을 포함한 통일외교안보 공약을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역시 그렇게 질문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답변, 이후(구체적인 날자 밝히지 않음)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라 함

▣ 심상정 후보- 선거본부 정책팀 차원에서 시민연합의 질의에 공약 발표문과 해설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답변. 이후 후보의 평화, 통일, 동아시아 외교 분야 공약 발표로 대체함

4. 제18대 대선후보 북한인권 정책공약 답변 정리표

－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 / 2012년 11월 6일 질의

질의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인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성 후보	비 고
<p>1-1. 북한3대세습,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p>	<p>북한의 권력 3대 세습은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 개선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책무기 개발보다는 경제개발에 관심을 쏟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할 것이다.</p>	<p>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남북경제 협력이 필요하다.</p>	<p>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으로 북한주민의 자유권, 사회권 증진에 기여</p>			

질의문	세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성 후보	비 고
<p>질의문</p> <p>1-2. 북한인권증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p>	<p>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지원하며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할 것.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북한 당국에 필요한 인권문제를 제기 하겠다.</p>	<p>북한인권문제의 공론화를 지지하는 입장</p>	<p>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노력 -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 계획 수립 -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p>			
<p>2. 북한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문제를 남북대회사 언급할 의의가 있는지?</p>	<p>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당국에 필요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p>	<p>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경착 등 포괄적인 접근 하에서 북한내 인권문제가 실질적인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p>	<p>법률, 학술 등의 분야 를 활용해 남북인권 대화를 추진하겠다. 종교의 자유 탄압, 대규모 식량난 등 자유권, 사회권을 망라해 명백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에서 능동 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p>			

질의문	세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성 후보	비 고
3.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하여	인권증진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제안된 북한인권법 내지 보다 개선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 실두 등 최선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반대	반대 ☐ 법안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정치 공세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4.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복송문제에 대한 입장 / 해외공관의 긴급대처 문제에 대하여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 을 위해 정부는 모든 다각적 노력을 기울 이겠으며, 탈북자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해 국제 기구와 유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외공관의 탈북자 보호매뉴얼 등 지침을 환실에 맞게 즉시 개선 하고, 관련국 및 국제 사회와 모든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제송환금지, 자유이사준중원칙에 따라 재외탈북자들의 인권보호 및 국내입국을 추진, 재외탈북자 보호의 실효성 증대와 탈북자 정착 내실화			

질의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성 후보	비 고
5. 6·25전쟁 국군포로 송환문제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보다 집요하게 촉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여론을 지속적으로 적극 환기시켜 나가겠다.		남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적극적 해결			
6. 남북자문제, 통영의 말 신숙자 모녀 송환문제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시 이 문제를 중점 의제로 제기 할 것이며, 특히 고위급 회담 등에서 우선 의제로 논의하겠다. 유엔사무총장실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실과의 협조도 엄그레이드할 것이다.	남북자문제 실질해결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상시화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인도적문제 해결 적극추진			

질의문	세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성 후보	비 고
7.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고 특권층이 아닌 일반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분배투명성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	-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우선 추진 - 인도적문제 해결에 최우선 주력 - 인도적 문제를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와 분리해 최우선 해결			
8. 금광산관광 재개문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북한 당국이 재발방지 등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관광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	대화를 통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연계			

질의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성 후보	비 고
<p>9. 후보의 한반도 통일방안과 6·15, 10·4 선언 평가</p>	<p>평화·장착/경제통일 (남북한경제공동체)/ 정치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7·4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선언 등 기본정신은 존중 되어야 한다. 다만 세부 사항을 이행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동의를 필요한 부분이나 조정할 부분도 있다.</p>	<p>6·15, 10·4선언을 계승해 포용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 시키겠다.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10.4선언을 계승 하면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대북 정책이고 동시에 원인하지는 구상 이다.</p>	<p>6·15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 은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발전, 제도화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p>			

질의문	세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성 후보	비 고
10. 기타 후보자의 정책이나 참가의의견은?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인수위 때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취임 첫 해의 6·15정상회담 기념일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겠다. 북한의 인도주의,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			
*기타 참고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 지도자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		서울-평양 상주대 포부 설치	

5. 각 후보의 북한인권정책공약 정리

시민연합이 각 후보에게 보낸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한 주요 3후보들의 답변을 살펴 보면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각 후보의 입장은 겉으로 보기에 는 차이는 없는 듯 하다.

특히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론과 방향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문제로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당의 입장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인 듯 하다.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입장과 북한인권법 제정〉

우선 북한의 3대세습 문제와 북한인권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보다는 경제개발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필요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 대화 시에 언급할 용의가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 당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개선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원을 설득하는 등 최선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대 목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여야 대치로 본회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음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남북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남북경제협력과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인권문제가 개선되는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단지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때라야 북한 내 인권문제가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평화는 깨지고 내정간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제정을 반대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지난 6월 5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직 당시에 북한인권법 논란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문제나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보듬는 문제는 이념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경기 파주시 비룡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으로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 주민 인권이 보편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북한주민의 자유권, 사회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북한인권 계획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도 인권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의 종교탄압을 비롯 자유권, 사회권을 망라해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외통위에 새누리당이 상정한 법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북한인권법 발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탈북자강제복송 문제에 대한 입장〉

중국 당국의 탈북자강제복송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박근혜 후보는 정부가 탈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탈북자 강제복송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합이 제기한 해외공관의 탈북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호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제사회와 모든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요구하며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탈북난민복송반대 집회현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를 찾아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가치”라고 강조했었다.

안철수 후보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재외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내실화하는 탈북자 정착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과거 국민, 참여정부를 비롯 현 정부까지도 탈북자 강제복송의 해결 당사국인 중국 정부를 향해 당당한 외교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탈북아동과 탈북여성들의 인권은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과 복송의 연쇄사슬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난 3월 중국당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탈북자 강제복송을 강제송환중지원칙에 따라 중지하고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이 복송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했었다.

향후 다음 정권에서 더 중국당국을 향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당당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신숙자 모녀 송환〉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보다 집요하게 촉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여론을 지속적으로 적극 환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당국 간 회담 재개 시 이 문제를 중점 의제로 제기할 것이며 특히 고위급 회담 등에서 우선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사무총장실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조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통영의 딸 신숙자와 혜원·규원 생사확인과 제3국의 가족상봉 추진, 깔(KAL)기 납치피해자 가족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통한 청원운동,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가족의 유엔청원운동 등 북한인권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더불어 반드시 정부가 지원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안철수 후보는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산가족은 상시 상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지원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박후보와 안후보는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고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와 분리해서 추진하며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박근혜 후보는 인도적지원이 일반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인도적 지원정책공약은 북

한 주민에게 어 떤 전달과정으로 분배하며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북한당국이 박왕자씨 피격살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후보의 한반도 통일방안과 6·15, 10·4 선언평가〉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경제통일(남북한 경제공동체), 정치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이 기본 입장이다.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것이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보며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합의 내용의 기본정신은 바로 평화와 상호존중이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합의의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동의를 필요하고 조정할 부분도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부분, 민간이 추진해야 할 부분, 남북 간 인식이 다른 부분 등은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6·15, 10·4선언을 계승해 포용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10·4선언을 계승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대북정책으로 동시에 남과 북이 윈윈하자는 구상이다.

안철수 후보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발전, 제도화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과 기타 북한인권에 대한 첨언〉

마지막 질의에서 박근혜 후보는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

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 지도자와도 만날 수 있다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인권과 인도주의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인수위를 통해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위임 첫째 6·15정상회담 기념일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6. 각 대선 후보의 북한인권정책공약에 대한 시민연합의 입장과 향후 과제

- 각 북한인권단체의 평가와 보충 질의 취합
- 각 후보의 북한인권정책의 모니터링과 2차 질의서 정리
-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 여론과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의 노력

19대 국회 상정중인 각 북한인권법 발의안 취합 정리와 조합문제,

박근혜후보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인지문제 평가와 대응모색

-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공약 재요청 및 2차 질의 유무 확정
- 기타

7. 제18대 대선후보 북한인권 정책 공약 1차 정리를 마치며

제18대 대선 후보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명확한 정책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주관으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영국 상원의 종신의원이자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경(卿)은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으며 1975년 미국과 유럽 35개국 등이 공산권 붕괴를 촉진하고자 체결한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제안했다. 올턴 경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사실상 묵인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턴 경은 필자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개월을 앞두고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를 위한 유럽자전거 캠페인 차 영국 방문 시 웨스터민스터 의사당에서 탈북자 증언자들과 함께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다.

그는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많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경향신문 기자와도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그 기자에게 이희호 여사 자서전 <나의 사랑, 나의 조국>을 직접 요약한 글을 보여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감옥생활과 가택연금을 ‘불법적인 잔인성의 조지 오웰적 세계’라고 표현했다. 그는 “발가벗겨지고,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한숨도 자지 못하며, 물고문을 당하고, 푸줏간 고기처럼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의 공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에 진저리쳤다”는 이 여사의 증언을 탈북여성과 비교했다. 올턴 경은 “누군가 이렇게 당할 때 우리는 수km 밖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이희호가 보여준 정신은 중국에서 강제복송당하고 미 의회 등에 출석해 증언한 탈북여성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아무런 전략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하며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악에 대해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말로 한국 진보진영에 쓴소리를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나라의 의원들이 협력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한 디테일이 없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통일세대인 청년세대들에게 더 진정성과 안도감을 줄수 있는 내용들로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감을 갖는다.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 이행에 대한 각 후보의 접근 방법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추진주체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국내외적으로 기울이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인권을 증진시키겠다고도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다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보편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장하는 후보는 보이지를 않는다. 입법기관과 정부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입법화 하고 국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노력을 구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남북관계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역동적으로 전달하고 여론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차제에 다음 정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를 미리 연구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연합이 질의한 10여 가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고무적인 것은 박근혜 후보가 북한인권법제정을 약속하고 의원들을 설득하여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북한인권문제를 북한당국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우려로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를

금지시켰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다시 범치 않기를 바란다. 또한 북한인권법제정이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효과가 없고 정치 공세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안철수 후보는 차제에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을 단일화의 안대로 가려버리고 자칫 북한을 예민하게 자극하거나 갈등요소가 될수 있다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은근슬쩍 넘겨버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시간이 없으니 대통령이 되고나서 보자는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모든 후보들의 입과 행동을 끝까지 깨어서 지켜보면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도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행복이란 단어도 모르고 죽어가는 북한 완전통제구역의 우리 국민,우리 주민들에게 그나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 국민을 악한 일에 가담하도록 하고 강도에게 더 살인무기를 쥐어주어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부 록>

제18대 대선 후보자에게 요청하는 북한인권정책 질의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1. 북한 3대세습정권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북한의 권력 3대 세습은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 북한의 현 상황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세와도 거리가 멀다. 북한의 인권 상황도 개선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나 인권 단체 보고서에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보다는 경제개발에 관심을 쏟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북한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답변〉 우선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 국내적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북한 당국에 필요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

특히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당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주민 정책의 중요성을 항상 고려하겠다.

2.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 정치범수용소 문제

북한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구소련 연방의 집단 농장 형태의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서가 과거 강제수용소에 수용됐던 정치범과 경비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작성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서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수용소 내부에 있는 감방 등의 위성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I)는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 6곳에 최대 20만 명이 구금되고 수천 명이 최소 180곳의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측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구금과 영양실조 등 많은 영역에서 인권침해 현상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인권문제 가운데 북한주민의 불법적인 구금과 구금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북한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후 향후 남북관계에서, 혹은 있을수도 있는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개선요구와 완전통제구역(혁명화구역),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북한 내에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치범 수용시설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북한당국에 필요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북한인권법제정문제

북한인권재단설립, 북한인권실태조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치, 북한인권직명대사설치, 북한인권 활동단체지원등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안이 구한나라당 의원중심으로 발의되었으나 지난 17대, 18대 모두 외통위상임위로 상정되지 못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

다가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구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하여 대북인도적 지원조항과 북한주민의 생존권만을 강조하다가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과 함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병합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답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책무이다. 더구나 인권증진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은 이미 국제화된 문제로 직접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미 제안된 북한인권법 내지 보다 개선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 설득 등 최선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4. 탈북자강제복송문제

중국은 유엔난민에 관한 협약을 1982년에 가입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이 불법적으로 월경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다고하여 무조건 송환시켜 박해와 처형을 받게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포함한 강제복송된 탈북여성들은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금지협약,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송환된 탈북자들을 대우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거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그리고 상위법인 국제법에 따라 탈북난민을 적극 보호하고 자국민으로 간주하여 중국정부가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지하도록 당당히 이 문제를 제

기해야 합니다. 금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탈북자강제송환문제를 북한인권결의안에 넣어표결이나 토론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달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내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탈북자강제복송중지와 ‘강제송환중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후보로서 탈북동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탈북동포보호와 중국당국의 탈북난민 강제복송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답변〉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부로서 수 있는 모든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며, 강제복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HCHR), 유엔 인권 이사회, 유엔 총회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통일부나 외통부에는 탈북동포보호전담부서도 없고 전담 실무자도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제3국의 해외공관에 보호요청을 해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외통부가 탈북자 보호를 위한 해외공관 긴급실행 매뉴얼을 만들어 탈북자가 보호요청을 할 경우에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 등 지침은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보다 현실에 맞게 수시 개선함과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모든 가능한 레벨에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6·25전쟁 국군포로문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는 6·25전쟁 국군포로 및 실종자를 8만2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중 8,300여명만 송환했고 북에 억류된 7만명이 넘는 국군포로들은 ‘괴뢰군 포로’라는 딱지를 붙이고 불발탄 처리, 탄광의 발파공, 벌목공 등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강요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환 포로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정과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해야 할 국군포로 대다수를 송환대상에서 제외시켜 억류한 뒤로 계속적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국방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7만 3천여명중 500여명은 아직 생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 500여명중 19명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진행됐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가 확인됐으며 17명은 가족과 상봉했으며 나머지 국군포로는 탈북자 등의 증언을 기초로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던 탈북 국군포로 및 가족들의 국내귀환은 지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 가족 400명이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6·25전쟁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되신 분들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보다 집요하게 촉구할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론을 지속적으로 적극 환기시켜 나겠다.

6. 납북자문제, 통영의 딸 신숙자문제

10만명의 6.25전사·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민들과 관련단체는 정부에 담대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25년 이상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길남 박사의 부인 통영출신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 오규원양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전국민이 서명을 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고등실무반(WGEID) 그룹에까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담장관직을 신설하여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하고 있고 국회예산으로 북한인권주간을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귀 대통령 후보께서는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며 어떤 정책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답변〉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 시 이 문제를 중점 의제로 제기할 것이며, 특히 고위급 회담 등에서 우선 의제로 논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것이다. 유엔사무총장실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조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7. 인도적 대북지원문제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특권층과 당 간부들에게 전용되거나 일부계층에게만 전달되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향후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북 인도적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겠습니까?

〈답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특권층이 아닌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며,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를 지금 보다 적극 활용할 것이다.

8. 북한군인에 의한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사태로 북한 관광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이 재개되면 모든 수입금의 대부분이 북한노동당 제39호로 흘러들어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로 소요된다는 주장과 보고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지금이라도 재발방지 등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관광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

9. 다음 대통령 재임기간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소에 갖고 계시는 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즉 어떤 과정을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평화정착/경제통일(남북한경제공동체)/정치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이 기본 입장이다.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것이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통일은 남과 북 모두가 잘 사는 통일이어야 하며,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합의 내용의 기본정신은 바로 평화와 상호존중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동의를 필요한 부분이나 조정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부분,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부분, 민간이 추진해야 할 부분, 남북 간 인식이 다른 부분 등은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기타) 후보자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견해(정책공약)를 밝혀주시고 위 질의서의 내용·답변과는 별개의 북한인권관련 정책이 있다면 더 공약하시거나 첨가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답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귀 단체의 관심과 개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11.5. 발표된 외교 통일 분야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하여 통일의 목적이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음을 밝히고,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어 북한주민의 인권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철수 후보대선 공약

인도주의, 인권문제의 실질 해결

안철수
(무소속 후보)

1. 현실진단

-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말함
-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 1988년 이후 적십자에 ‘이산가족 신청’을 한 12만 8747명(올해 8월말 기준) 중 41%인 5만 2744명이 이미 사망
-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데에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
- 남한에서도 대북관, 통일관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큼
- 지속적인 탈북, 강제송환, 2만 4천여명의 국내 입국 탈북자의 정착 곤란, 입국 후 제3국행 등 탈북자 문제의 다변화
- 국내 입국 정착제도에서 효율성 문제가 발생

2. 실천과제

-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 주력
 - 인도적 문제를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와 분리해 최우선 해결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시화
 -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적극적 해결

-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추진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노력
 -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 계획 수립
 -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우선 추진
-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착을 맞춤형으로 실시
 - 강제송환 금지, 자유의사 존중 원칙에 따라 재외탈북자들의 인권 보호 및 국내 입국을 추진
 - 탈북자들의 조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증대
 - 입국자의 2/3가 여성, 아동임을 감안해 맞춤형 치유와 맞춤형 정착 지원정책 확대

3. 기대효과

- 인도주의, 인권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으로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회복
 - 남북간 신뢰 회복 증진
 - 한국의 국격 제고
- 북한 인권의 실질 개선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 사회권 증진에 기여
- 재외 탈북자 보호의 실효성 증대와 탈북자 정착 내실화

차기정부 북한인권 시민사회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발제문이 북한인권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향후 과제에 관해 정리한 것이 아니라, 주요 대선 후보의 북한인권 공약과 관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체로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 왔던 현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식의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추구”하는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문제와 남북관계는 일부 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엄연히 서로 다른 독자적 영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문 후보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 제시한 인권개선 방안이 실제로는 온전히 집행되기보다 구두선에 그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실행플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과제에 앞서서 그동안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부 자체의 북한인권 무관심 정책과 국민 전반의 낮은 관심도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현안화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나 대응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의 측면에서 운동이 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활동경험이 일천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의욕에 비해 활동성고가 미약했다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철학이 부재했고, 시민사회

자체도 유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혔어야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 후반기의 신속자 모녀 구출운동, 올해 초반의 탈북자 북송저지 운동 등에서 과거와 다르게 운동이 좀 더 대중화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김영환 씨의 중국 내 구금도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영화나 음악회, 사진전 등 문화-예술적 접근이 확대된 것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판단한다.

우선 전제할 것은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시민사회운동의 방향이나 역할이 달리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시민사회도 정부와의 우호적 협력 속에서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 정부가 들어설 경우는 기존 북한인권 운동단체들과의 일정한 긴장이 불가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진보진영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강경한 대립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정치 문제에서 보수-진보의 대립-갈등 구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는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 시민사회 진영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다만 현재의 북한인권 법안에서 '인권실현의 의지 표명', '기록보존의 필요성 제기'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적은 인권재단 등의 설립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즉 상징적 차원의 법안을 만들고 하위 규정 등을 통한 실효적 방안 모색 필요), 국제적 기준이 존중된다면 전면적 인도지원(현재 한국의 식량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받을 수도 없는 차관임)에 대한 찬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이 최종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좀 더 진전된 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마다 전문적 영역을 개발-구축하고 단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기정부 북한인권 시민사회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원웅
(관동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12 통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들 가운데 대북정책 현안 가운데 ‘북한인권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비율이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인권개선’이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부상한 것은 2009년 이래 처음이다. 이전에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 개혁개방’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되었다. 또한 ‘북한인권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응답자들 대다수는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변동을 도모하거나 강조하는 대북 강경론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특성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 동안 우리 사회와 정부 일각에서 유지하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열망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소위 ‘북한 인권은 우리 정부의 관할권이 아니라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 정권을 잡은 386세대 정치인들과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대북정책라인의 입김 속에 가능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이 바뀌자 이 결정을 번복하고 북한인권문제를 주도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거듭 나고 있다.

통일부의 입장도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참여정부’는 통일부 인권환경팀을 해체하고 인권문제는 남북회담에 ‘걸림돌’이라는 일부의 시각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계상되는 즈음 입장을 바꾸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북협상 의제 가운데 ‘북한인권문제’라는 담론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적 문제’라는 영역 속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북한측이 인권문제를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으로 간주하고 일관되게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탈북자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탈북자 문제를 ‘경제적 적응’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 했다가 탈북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사례가 그러한 시각을 대표하고 있다. 이 용어는 탈북자들이 중국의 야만적인 강제송환 정책으로 극심한 인권침해의 고통 속에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체제단속을 목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한 전례가 있다.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당시 정부는 입장을 슬그머니 바꾸어 다시 찬성표를 던지는 등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역시 과거 정부 하에서 사선을 넘어 탈출한 국군포로 노인에게 중국 영사관 직원이 ‘세금을 낸 것이 있느냐’는 막말과동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씁쓸한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북한인권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즉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이며 남북관계기본법과 6.15 공동선언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권문제는 미국이 북한체제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서 유포하고 있는 보수적 전략이며 주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탈북자 문제는 중국의 주권문제로서 우리가 개입할 외교적 수단이 없으며 탈북자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중관계가 악화되어 국가이익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넷째 북한인권문제는 정책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고 경제협력을 통한 ‘실질적’ 평화체제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북한인권문제가 남북한 당사국간의 협상의제를 넘어서 유엔의 중심가치를 위배하고 있는 중대한 국제문제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인권의제는 남북간 협상의제일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의제로서 세계10위권 산업국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중심국으로 발돋움하는 국가로서 이를 외면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이 이미 4개의 인권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보호의 책임을 북한당국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정간섭론은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탈북자의 고통 감소는 통일을 헌법적 국가과제로 지향하는 우리 민족문제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정책적 사안이다. 남북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햇볕론’의 전제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동향과 동북아 안보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극히 편협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동구권의 사례를 본다면 인권문제는 외교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통합 후보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인권증진 방안이라고 내놓는 대북인도지원 확대정책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효성’이 없는 ‘의존성’만 강화시키는 독약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과감한 대북경제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권증진과는 아무 상관없는 ‘평화’ 라는 정치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다. 박근혜 후보 측의 공약 속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이를 대북정책의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진정성은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푸짐

한 '선물'이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과연 인도지원은 남북관계에 평화와 북한 주민의 '경제적' 인권증진을 가져다 줄 것인가?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물자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분배하라는 것이다. 세 후보 캠프에서 내놓는 투명성 보장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로서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북한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며 당장의 실효성을 따지는 정책과제가 아니라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권정책은 당장의 변화와 조급한 실적을 요구하는 정책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관변화와 사회변화를 전제해야 가능한 정책영역이다. 그렇다고 인권문제가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는 단지 정치적 이념논쟁으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이다.

차기정부,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

| 인 쇄 | 2012년 11월

| 발 행 | 2012년 11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26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10-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